양양 양우 내안愛 입주자 모집공고

※ 본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바람.

■ 이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6.05.26 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임) ■ 강원도 양양군은 비투기과열지구이며, 당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입니다. ■ 당 아파트는 청약예금제도 실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9조」에 의거하여 일반공급이 이루어지며 거주기간에 따라 순위별 신청자격이 적용됩니다.

■ 순위별 신청자격

구 분	면적구분	순 위	경과기간
민영주택	전 주택형	1순위	강원도 양양군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2순위	강원도 양양군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3순위	강원도 양양군 지역에 1년 미만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 본 아파트는 신탁법 및 자본시장가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토지신탁을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으로, 위탁자 주식회사 영진건설과 수탁자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가 체결한 신탁계약 내용에 따라 공급되는 것입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은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시는 신청 모두를 무효처리합니다. ■ 고령자와 장애인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의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5.26)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장애인 등록증이 발급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자 중 최하층을 희망하는 청약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에게 최하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당첨 제한관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의 규정에 의거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기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규정에 의거 기당첨자 본인은 물론 기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은 85㎡이하 당첨자인 경우 당첨일로부터 향후 3년동안, 85㎡초과 당첨자인 경우 당첨일로부터 향후 1년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 민영주택은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본 아파트는 비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당 아파트의 청약이 가능합니다. -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계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의거 강원도 양양군 허가민원과 - 43327호(2016.05.26)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연창리 238외 18필지

▣ 대지면적 : 9,292㎡

▣ 공급규모 : 지하1층, 지상15층, 2개동 209세대 및 부대 복리시설, 주차시설 215대
[특별공급 기관추천 20세대, 다자녀가구 20세대, 신혼부부 20세대, 노부모 부양 5세대, 일반공급 144세대]

▣ 공급대상

(단위:㎡)

구분	주택형 (주거전용 기준)	전체 공급 세대	공급면적			기타 공용	계약 면적	대지 지분	특별공급				일반 공급	최저층 우선 배정
			주거 전용	주거 공용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노부모	신혼 부부		
민영	83.9688	150	83.9688	26.1830	110.1518	24.6467	134.7985	44.1723	15	15	4	15	101	10
	83.5201	59	83.5201	27.0045	110.5246	24.5150	135.0396	43.9363	5	5	1	5	43	3

(단위:㎡, 원)

주택형	층별 구분	세대수	공급가격(원)			계약금(10%)	중도금 (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시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입주시
							2016.10.22	2017.1.22	2017.04.22	2017.07.22	2017.10.22	2018.01.22	
83.9688 (83A)	1층	10	31,710,000	179,690,000	211,400,000	21,140,000	21,140,000	21,140,000	21,140,000	21,140,000	21,140,000	21,140,000	63,420,000
	2층	10	32,385,000	183,515,000	215,900,000	21,590,000	21,590,000	21,590,000	21,590,000	21,590,000	21,590,000	21,590,000	64,770,000
	3층	10	33,060,000	187,340,000	220,400,000	22,040,000	22,040,000	22,040,000	22,040,000	22,040,000	22,040,000	22,040,000	66,120,000
	4,5층	20	33,735,000	191,165,000	224,900,000	22,490,000	22,490,000	22,490,000	22,490,000	22,490,000	22,490,000	22,490,000	67,470,000
	6~10층	50	34,065,000	193,035,000	227,100,000	22,710,000	22,710,000	22,710,000	22,710,000	22,710,000	22,710,000	22,710,000	68,130,000
	11~15층	50	34,410,000	194,990,000	229,400,000	22,940,000	22,940,000	22,940,000	22,940,000	22,940,000	22,940,000	22,940,000	68,820,000
83.5201 (83B)	1층	3	31,575,000	178,925,000	210,500,000	21,050,000	21,050,000	21,050,000	21,050,000	21,050,000	21,050,000	21,050,000	63,150,000
	2층	4	32,250,000	182,750,000	215,000,000	21,500,000	21,500,000	21,500,000	21,500,000	21,500,000	21,500,000	21,500,000	64,500,000
	3층	4	32,925,000	186,575,000	219,500,000	21,950,000	21,950,000	21,950,000	21,950,000	21,950,000	21,950,000	21,950,000	65,850,000
	4,5층	8	33,600,000	190,400,000	224,000,000	22,400,000	22,400,000	22,400,000	22,400,000	22,400,000	22,400,000	22,400,000	67,200,000
	6~10층	20	33,930,000	192,270,000	226,200,000	22,620,000	22,620,000	22,620,000	22,620,000	22,620,000	22,620,000	22,620,000	67,860,000
	11~15층	20	34,260,000	194,140,000	228,400,000	22,840,000	22,840,000	22,840,000	22,840,000	22,840,000	22,840,000	22,840,000	68,520,000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공통 유의사항 • 2009. 4. 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람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주택으로,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사업주체 자체심의 결과 주택형별, 층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임 • 본 주택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별, 호별로 구분됨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미포함된 가격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발코니 확장은 무료옵션으로 제공됨.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관리사무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전기/기계실 등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리사무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전기/기계실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공급 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상기 공급금액에는 마이너스옵션품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마이너스옵션품목은 분양계약자 선택사항임 • 판매시설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함(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중도금 금융대출을 원할시 수분양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함(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 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미납시 연체료 가산)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음.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조세(종합토지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 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 시 납부하여야 함(단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기준)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 없음)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그 외 면적은 중심선 치수로 산정함.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임(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함) • 사업주체가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으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함 •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사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를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사용연료는 LPG이며, LPG장소가 설치됨)이며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임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사본불가)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2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 특별공급 공통사항[기관추천(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 다자녀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세대주 한정)으로서 1회에 한하여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음.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48조에도 불구하고 청약통장 가입과는 무관하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5.26) 현재 강원도 양양군 지역의 거주기간에 따라 배점점수가 상이할수 있음.

■ 특별공급 유의사항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및 세대원(다음 각 목의 사람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한다.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에 한정한다)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주택공급신청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가 청약시 무주택세대구성원과 주택공급신청자는 동일함) ※ 1세대내 1인만 신청가능
무주택여부 확인대상자	-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본에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공통사항 - 1세대내 1인만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부적격당첨자로 처리) -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됨 (부적격당첨자로 처리)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의함

• 특별공급 1회 제한 및 유의사항 - 특별공급은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에 대하여 1회에 한해 공급함. -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함.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특별공급 신청 미달 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함. - 특별공급 당첨자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첨이 취소됨.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특별공급 주택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시는 신청모두를 무효처리함. - 특별공급분의 동,호수 배정추첨을 일반공급분과 일괄 수행하며 당사 견본주택에서 신청자 입회하에 일반당첨자의 동·호수 추첨과 함께 통합 진행함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 될 수 있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및「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자로 주택공급 신청 시 1층 우선배정을 신청한 자 중 당첨자에 대하여는 해당 주택형의 1층을 우선 배정함. [단, 1층이 없는 주택형은 최저층을 우선배정 할 수있으며,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우선배정

■ 기관추천 특별공급

• 신청자격(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5.26) 현재 강원도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해당기관장의 추천을 받은자

추천 대상자

- 철거주택 소유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유족, 보훈대상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의사상자 또는 의사자유족,
-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이상 복무한 군인, 북한이탈주민, - 납북피해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
- 공무원 또는 군인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전(全) 가족이 국외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사람 또는 정부의 인사발령에 따른 근무지 이전으로 전 가족이 주택건설지역을 달리하여 거주하는 사람 중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이내인 사람,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국가시책상 국내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영주귀국하게 하는 박사학위 소지 전문가로서 입국일부터 2년 이내인 자,
- 우수선수 및 우수기능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또는 그 유족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대상자를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함 - 청약경쟁 발생시 담첨자 선정방법은 추첨에 의하며 잔여물량 발생시 일반공급으로 전환됨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신청자격(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5.26) 현재 강원도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자로서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직계자녀 3명 이상을 둔 자

• 당첨자 선정 방법 -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 하되, 잔여물량 발생시 일반공급으로 전환됨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배점기준표(신청시 배점표에 자필작성 및 점수기재)

평점요소	총 배점	배 점 기 준		비 고
		기 준	점수	
계	65			
미성년 자녀수 (1)	5	미성년 자녀 4명 이상	5	· 자녀(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영유아 자녀수 (2)	10	자녀 중 영유아 2명 이상	10	·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 (3)	5	3세대이상	5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한부모가족	5	· 공급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 (4)	20	공급신청자가 만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로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공급신청자 나이가 만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당해 시·도 거주기간 (5)	20	10년 이상	20	· 공급신청자가 당해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5년 이상~10년 미만	15	
		1년 이상~5년 미만	10	
		1년 미만	5	
양양군 거주기간 (6)	5	3년 이상	5	· 공급신청자가 양양군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1년 이상	3	
		1년 미만	1	

(1), (2) : 주민등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6)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당첨 받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주민등록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

• 신청자격(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5.26) 현재 강원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주 ①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고 있는 자 ②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함(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 기간에서 제외한다.)

• 당첨자 선정방법 - 민영주택 가점제 산정기준(입주자저축가입기간 점수 제외 및 양양군 거주기간 점수 신설)을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의함 -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일부변경)에 의거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 선정 - 신청자 본익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 - 잔여물량이 발생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됨

- 가점 산정기준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 수	가점구분	점 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만 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1년 미만 (무주택자에 한함)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 부양 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		
③ 양양군 거주기간	5	3년 이상			5	- 주민등록등·초본
		1년 이상			3	
		1년 미만			1	
총점	72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②+③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신청자격(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5.26) 현재 강원도에 거 주하면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 ① 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기간이 5년 이내이고, ② 혼인기간에 임신 중(입주자모집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로 확인, 이하 동일)이거나 출산(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 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확인, 이하 동일)하여 자녀가 있음 ③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세대구성원의 소득 포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이하일 것 - 상기 자격요건 중 재혼한 경우에는 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을 포함한다)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계약서류 제출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자는 입주지정개시일 전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이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됨 ※ 계약서류 제출시 입양의 경우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됨. ※ 입주지정개시일까지 임신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201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통계청 자료)

구 분	2015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3인 이하	4인	5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4,816,665원 이하	5,393,154원 이하	5,475,403원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5,779,998원 이하	6,471,785원 이하	6,570,484원 이하

*6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5인 이상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5,560,026원) + {1인당 평균소득(412,712원)×N-5 } * N → 6인 이상 가구원수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배우자,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으로 하되,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00퍼센트를 넘지 않아야 한다.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은 가구당 연간소득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 당첨자 선정방법

-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 ①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②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 출산은 재혼한 경우에는 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 동일순위 경쟁시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 선정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② 미성년인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③ 미성년인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자녀수를 산정할 때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산정한다.

• 소득입증 서류

해당자격		소득세 입증 제출서류	발 급 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재직증명서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연말정산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 해당직장 · 세무서
	신규취업자, 금년도 전직자	■ 재직증명서 ■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	
	전년도 전직자	■ 재직증명서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직인날인 된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자영 업자	일반,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 원본(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을 반드시 제출)	·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 법인등기부등본	· 세무서
	금년도 개업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징수원부로 발급신청) 또는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일과 가장 가까운 시기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 당해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동사무소
비정규직 근로자/일용직근로자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 해당직장 · 국민연금관리공단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각서(당사 견본주택 비치)	· 접수장소

*군복무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종교기관(교회, 사찰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총 소득을 동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 **일반공급**

■ 공통사항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5.26.)현재 주택건설지역인 강원도 양양군에 거주하는 세대주(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 재외국인,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5.26)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함.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입주자 모집공고분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2건이상 신청시 청약 모두를 무효로 처리함. • 강원도 양양군은 청약예금제도 실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청약예금 가입여부와 관계없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9조에 의거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청약 순위에 따라 공급함. • 청약자격은 아래의 순위별 신청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함. • 본 주택은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향후 신청주택에 따라 재당첨제한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관계 법령에 의거 과태료 부과 등이 될 수 있음.

■ 순위별 신청자격

구 분	면적구분	순 위	경과기간
민영주택	전 주택형	1순위	강원도 양양군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2순위	강원도 양양군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3순위	강원도 양양군 지역에 1년 미만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순위별 공급일정

신청 대상	신청일자	접수시간	신청방법	비 고
1순위	2016. 06. 01(수)	10:00 ~ 16:00	양우내안애 견본주택 방문접수	양양읍 연창리 77-4번지
2순위				
3순위				

※ 상기 접수시간의 16:00은 청약접수완료 기준이며, 16:00가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금

구분	청약신청금	신청금 납부방법	입금계좌
1순위	일십만원 (₩100,000)	현금(수표) 혹은 통장 입금	394437-04-016249 국민은행 예금주:대한토지신탁(주)
2순위			
3순위			

■ 청약신청금 환불방법

•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2016.06.02) 익영업일 이후 (평일:10:00~16: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환불장소 : 청약신청시 청약자가 제출한 본인명의 계좌로 이체됨. • 환불시 구비서류:가) 본인·배우자 환불시 : 주택공급신청접수(영수)증, 주민등록증, 청약당시 사용인장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서명으로 신청한 자가 환불 시에 한함) 나) 제3자 대리 환불시 : 상기 구비서류 외에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청약신청금 환불 위임용) 1통[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서명인증서)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인감도장(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제3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위임장. • 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며, 청약신청금에 대한 환불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3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 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 대상	신청일자	신청시간	신청방법 및 장소
특별공급	기관추천 / 다자녀 / 신혼부부 / 노부모	2016. 05. 31(화)	10:00~ 16:00	견본주택 방문접수 양양읍 연창리 77-4번지
일반공급	1순위	2016. 06. 01(수)		
	2순위			
	3순위			

• 상기 접수시간의 16:00은 청약접수완료 기준이며, 16:00가 경과하면 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과밀로 서류심사가 지연될 경우 당첨자 선정 및 공고시간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신청 자격별 구비서류**

■ 일반공급

구 분	구비서류
본인신청	- 주택공급신청서 (견본주택 비치) - 주민등록증(본인), 주민등록동본 1부,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지 변경내역 전부포함)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배우자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제출(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 청약신청금 환불계좌 사본(신청자 명의통장)
대리인신청시 추가서류	※본인 및 배우자 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인임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서명인증서)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 청약자의 인감장(청약신청 접수장소에 비치), 대리인 주민등록증

■ 특별공급

구 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해당자)			
공통서류	O		공급신청서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O		인감증명서	본인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O		인감도장	본인	
	O		주민등록증	본인	또는 운전면허증
	O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및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O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O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기관추천	O		추천서 또는 인정서	본인	상기 특별공급 공통서류 외 해당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증명서) 1통(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 복지카드등 기타서류 불가)
다자녀 특별공급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O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O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여성가족부의「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혼인신고일 확인
	O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O		소득증빙 서류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O	기본증명서	자녀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O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O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O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접수 장소에 비치
		O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접수 장소에 비치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O		인감증명서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O		인감도장	청약자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O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O		주민등록증	대리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O		인장	대리인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단, 주민등록상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는 책임을 지지 않음. • 청약신청시 사업주체는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시 주민등록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전 본인의 청약자격을 반드시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람. •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4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일정

▣ **일정 및 계약 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발표	동호수 발표	계약체결
특별 공급	기관추천 / 다자녀 / 신혼부부 / 노부모	• 일시 : 2016. 05.31(화) 17:00 이후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게재	• 일시 : 2016.06.02.(목) • 확인방법 당사 견본주택 게재	• 일시 - 2016.06.08.(수) ~ 2016.06.10(금) (3일간,10:00 ~ 16:00) • 장소 : 양양 양우내안애 견본주택
일반 공급	1순위	• 일시 : 2016.06.02.(목) 14:00 이후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		
	2순위			
	3순위			

※ 유의사항

• 특별공급 동·호수 추첨은 신청자 입회하에 일반공급 동·호수 추첨과 당사 견본주택에서 일괄 수행함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자의 동·추첨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음. • 정당 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하여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 • 예비 당첨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됨)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의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내에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계약체결장소에서 직접 수납은 불가함.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입주자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특별 공급	■ 당사 견본주택에서 당첨자만을 우선 선정 발표.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부적격세대는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일반 공급	■ 견본주택에서 특별공급 당첨 주택형을 제외한 잔여세대의 일반공급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를 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경쟁발생시 추첨을 통해 우선 선정함. ■ 전체 당첨자를 대상으로 당첨자의 입회하에 공개추첨에 의해 동호수를 결정함.

▣ **예비당첨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예비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당사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함.(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당첨자 공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정당당첨자의 계약체결 기간 이후 발생한 미계약 세대 및 계약취소 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할 예정이며, 일정 등은 별도 통보함. •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은 예비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됨. • 예비당첨자는 당사에서 통보하는 동·호수배정일 및 계약체결일 불참 시 예비당첨자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

5 계약체결 절차 및 유의사항

▣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계약기간	장 소	계약금납부
■ 정당 당첨자 2016. 06. 08(수) ~ 2016. 06. 10(금) (3일간, 10:00 ~ 16:00) ■ 일정 및 시간의 변동이 있을 시 당첨자를 대상으로 별도 공지함	당사 견본주택	■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입금 후 입금증 제출 ■ 견본주택에서 계약금 수납 불가

▣ **분양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우리은행	1005-402-981209	대한토지신탁(주)

• 분양대금은 약정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입금(입금시 비고란에 동·호수 또는 계약자 성명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음.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시 지참 요망(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정당 당첨자 지정 계약기간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당첨 효력이 상실됨)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등 청약자격 유무 판단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중당첨 및 부적격 당첨자의 계약시 아파트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계약 이후라도 부적격자는 정해진 기간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됨.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시 구비사항**

구 분	구 비 서 류
공통 (본인계약 체결시)	■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 (단, 인터넷 청약신청 당첨자는 제출 생략) ■ 계약금 입금확인증(※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입금완료후 입금증 제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아파트 계약용) 또는 서명인증서 1통(외국인에 한함), 인감도장 ■ 본인확인 및 신청자격 확인서류(거주지역, 가점항목별 입력내용 확인서류 등)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본 1통, 주민등록초본 1통, - 가족관계증명서 1통(미혼, 이혼, 사별, 배우자 분리세대 등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배우자 유무 확인이 불가한 자에 한함), -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함 / 거주기간 및 세대주기간 확인이 불가시 주민등록초본 1통 추가제출) - 혼인관계증명서 1통(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기간을 무주택기간 가점에 산정한 분) - 배우자 직계존속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주민등록초본 1통(배우자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분에 한하며, 초본은 3년간 거주확인 사항임) -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초본 1통(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단, 직계비속은 만 30세 이상에 한함) - 직계비속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분에 한함)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원 1통 - 주택소유현황 서약서(견본주택 비치)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당첨자중 해당자)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서류 - 건물등기부등본(등기접수일 기준)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처리일 기준,가옥대장 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저가 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재당첨 금지 등의 사유로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당첨자에 대한 소명서류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제3자 대리계약시 추가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 추가제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아파트계약 위임용)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 (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계약자의 인감도장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에는 제출 생략)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계약체결 장소 비치)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감(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함. • 계약체결 후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하여 당첨된 경우(단, 착오 기재한 청약가점항목 확인결과 최종 가점점수가 해당 주택형 당첨최저가점점수 이상인 경우 당첨자로 인정) - 특별공급 당첨자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및 1순위자(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 무주택여부를 검색하여 부정당첨자를 판명함. •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만료 전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을 통보 받은 때에는 이들 주택 중에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먼저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봄. •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사업주체에서 사업승인(변경승인 포함)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변경을 요구하거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는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계약관리(안내, 고지 등)를 위해 계약체결 시 2011년 7월 29일부터 새로운 법정주소인 도로명 주소(행정자치부 안내 참고)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계약 시 도로명 주소가 명기된 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종전 지번 기준 주소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준함.

▣ **중도금 대출안내**

• 본 아파트의 분양 중도금은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도금 전액 무이자 지원예정임.(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당사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해제를 주장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해지·해제를 할 수 있음.

▣ **입주예정월 : 2018년 (06)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입주자 사전방문 실시**

• 사용검사 전에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 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입주자 사전 방문행사를 실행하며 그 일자는 추후 통보함.

6 발코니 확장 및 플러스옵션, 마이너스옵션

▣ **발코니 확장 공사비**

구분(주거전용면적)	83.9688(83A)	83.5201(83B)
발코니 확장금액	무상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여 견본주택에 설치하였음. • 상기 아파트는 전세대(마이너스옵션세대 제외) 발코니 확장을 무상으로 일괄 시공하여 공급하오니 청약 및 계약 전 이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향후 발코니 미확장 요구 및 미확장에 따른 공사비 상당금액을 사업주체에 요구할 수 없음.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제시된 선택형 외에 실별, 위치별, 선택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설치,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 사항은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실내 습도 등 생활 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함. • 단위 세대의 설계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하여 발코니 확장형을 중심으로 설계하였음. •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확장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설치되어질 수 있음.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새시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시공 인·허가 협의완료 후 변경될 수 있음.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발코니확장과 가변형 칸막이의 제거, 변경을 개별시공(관계법령에 의거 입주자등의 동의 필요) 할 경우 계약자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 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음.

▣ **마이너스 옵션**

■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기본선택품목과 이를 제외한 기본형건축비)

• 주택법 제38조 제1항 제3호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벽지, 바닥재, 주방용구, 조명기구, 타일, 창호, 가구, 위생기기 등)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음. • 본 주택은 국토교통부의「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 시 입주자 선정절차」중 당첨자선정 발표 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함.

■ 마이너스 옵션 적용품목

구 분	품 목	적용범위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본공급 수준
일괄선택 (개별선택 불가)	바닥	각실,거실,주방,현관	바닥재(강마루), 현관바닥(폴리싱타일), 걸레받이	바닥난방+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현관디딤판 및 현관굽도리(신발장/현관장 하부 제외)
	벽	각실,거실,주방,현관	벽지 및 벽체 마감(주방 및 욕실 타일마감포함), 초배지, 아트월(타일, 우드판넬 등 일체포함), 걸레받이, 신발장 및 가구류	벽 석고보드(해당부위), 콘크리트 면처리 또는 시멘트 몰탈(해당부위)
	천장	각실,거실,주방,현관	천정지, 반자돌림(몰딩 포함), 우물천장(몰딩 등 마감일체), 인테리어 마감, 전동빨래건조대	천정틀위 석고보드
	조명기구	각실,거실,주방,현관	부착형 조명등기구 (매입등 제외)	배선기구류(스위치 및 콘센트 등), 매입등기구
	욕실	공용,부부욕실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기등), 샤워부스, 타일, 악세사리 일체, 수전, 욕실장, 욕실폰, 욕실휀	액체방수 및 조적위 바탕처리, 전기 배관/배선
	주방	주방	주방가구 일체 (상하부장 및 상판, 벽마감 포함), 악세사리 일체, 렌지후드, 수전, 음식물탈수기, 주방TV폰, 가스쿡탑, 광파오븐	소방관련 시설, 배기덕트, 설비배관(급/배수, 난방)
	문	각실 출입문	각방 문틀 및 문짝도어록	현관문, 발코니 PL창호, 욕실문틀, 하부씰, 대피공간문, 디지털도어록
	가구 및 기타사항	각실	가구류 일체(신발장, 안방 드레스룸장/파우더장,각종 선반, 주방 상하부장,반침장 등), 수전류	설비배관(단부보호처리), 거실 월패드

■ 마이너스 옵션 금액

주택형(㎡)	83.9683(83A)	83.5201(83B)
마이너스옵션금액(원)	23,610,525	23,714,322

■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 사항

• 마이너스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 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임. • 분양계약 이후에는 자재 발주 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옵션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능 함.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계약세대는 발코니확장공사 신청이 불가능 함. • 마이너스옵션 선택 후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발코니확장을 할 경우 에너지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할 경우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 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 기한은 추후 별도 안내문을 통해 안내해 드릴 예정임.

7 기타

▣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상 처리일) 기준임. • 주택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함.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됨.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①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② 전용면적 85㎡ 이하의 단독주택 ③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전용면적 20㎡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또는 멸실되어 있거나, 주택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소유한 경우의 특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 •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1주택(소형·저가주택) 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에 일반공급으로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함.- (현재:소형·저가주택 소유자)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경우.- (현재:무주택자)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단, 2007.8.3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한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40조, 제41조, 제46조 특별공급 제외)시 적용함.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함. •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봄.(단,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외) 1. 같은 순위(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분양형토지신탁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시행자인 영진건설(주)가 수탁자인 대한토지신탁(주)에 시행을 위탁해 진행하는 분양형토지신탁 사업으로서 실질적인 건축주(사업주체)는 위탁자인 영진건설(주)이며, 양우건설(주)는 시공사로서의 책임준공 의무를 부담하며, 대한토지신탁(주)는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의 수탁자로서 의무를 부담합니다. • 본 공급계약 대상 재산에 대한 일체의 하자담보책임(오시공, 미시공, 사용승인 전에 발생한 하자 포함)은 위탁자 영진건설(주) 및 시공사 양우건설(주)가 부담하며, 매수인은 대한토지신탁(주)에게 하자보수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수분양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은 토지비, 공사비 등의 상환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 본건 공급대상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설계 및 시공은 분양계약체결일 이후 내장 및 외장 재료의 수급 여건, 현장 시공여건, 입주자의 편의성 제고, 관련 법규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수분양자에 대한 사전 통보 없이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서 건축법,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등 관련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통보 등 절차를 거치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기능적·객관적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분양자는 위 변경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신탁해지, 신탁목적 달성 등의 사유로 위탁자 겸 수익자[영진건설(주)]와 수탁자[대한토지신탁(주)]가 체결한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분양계약상 매도인 지위에서 가지는 모든 권리·의무(하자보수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 포함)는 위탁자 겸 수익자[영진건설(주)]에게 면책적·포괄적으로 이전된다. • 개별 분양세대에 대하여는 매수인에게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분양계약상 매도인 지위에서 가지는 수탁자의 모든 권리·의무(하자보수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 포함)는 위탁자 겸 수익자인 [영진건설(주)]에게 면책적·포괄적으로 이전된다. ■ 기타 유의사항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평형 환산법 = 형별면적(㎡)× 0.3025 또는 형별면적(㎡) ÷ 3.3058 •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당사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포함)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주택공급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지된 내용과 청약자 기재사항을 반드시 대조하여 이상 유무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는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청약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함.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확인하시기 바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함. •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 •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전실)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상기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변동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 및 사이버모델하우스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자재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후 당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임.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탈로그,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 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람. • 사이버 견본주택의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사이버 견본주택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을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 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임. • 본 아파트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단지내 판매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 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음. • 단지 마을 명칭 및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입주 시 공급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음.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모형, 마감재 보드, 인쇄물을 참고 하시기 바람.(도면과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함)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마이너스옵션 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 됨.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 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의 이미지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 경관계획(야간경관조명 포함) 및 색채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함. • 각종 홍보물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 상의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개별난방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음.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당사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함. • 발코니 개별확장 및 마이너스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련 법령에 맞게 시공되어야 하며,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하는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람.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시설(도로, 경관 녹지 등)은 허가관청 및 국가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설치가 지연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이 상이할 수 있음.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 신용 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대지경계 및 면적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함. • 각 세대별 장식구조물의 위치 및 높이가 상이하고, 일부구간에서 장식물이 일부 조망을 가릴 수 있으니 계약 시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저층부에는 단지 내 부대시설(상가 및 커뮤니티시설 등)이 계획되어 그 지붕층에 면한 저층부 세대는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실외기 설치공간이 발코니에 마련되어 있으며, 외기로 그릴고정창이 기본으로 설치됩니다. 본 그릴창에는 고정 방충망이 설치될 예정이며, 냉방기 성능유지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이에 대해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음. • 본 아파트 기반시설의 준공 시기는 실시계획 인가사항에 의거 시공되므로 아파트 입주시기와 다를 수 있으며, 관련 인허가 및 기타 여건 변동으로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어린이놀이터, 주민공동시설 등 설치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인접 동 및 인접 세대에 의해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람.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음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 단지 내에 쓰레기분리장 등이 노출되어 저층부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대피공간의 방화문 설치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대피공간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출입문은 방화문이 설치되며, 입주후에도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재질을 변경할 수 없음.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음.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실외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람.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아파트 외관 구성상 일부세대의 전면 발코니 등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각종 설비층과 부대시설 등이 설치된 동의 옆 또는 위층은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위층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 일부 옥상에 면하는 고층부 세대는 사생활권 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판매시설, 경로당, 주민공동시설과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프라이버시가 불리하고, 소음, 조망, 일조, 난방, 진동, 냄새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으니 각 시설의 위치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수경시설 및 조경수 식재 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 이상으로 시공됨),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질 수 있음.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판매시설은 별도 분양시설로서 아파트계약자가 임의로 설계변경이나 대지지분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 • 타 지역의 타사 또는 당사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등 단지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저층부 외벽마감, 동 현관, 지하출입구 등 공용 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투시도 등에 표현된 아파트 입면에는 실제 시공 시 줄눈 또는 문양이 형성되는 등 세부 디테일이 변경 될 수 있음 • 사전에 사업부지 내, 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 사업부지외에 나머지 부지(도로, 경관 녹지 등)는 인허가 과정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주택법」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 따름. •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사업주체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함. •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타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승인(건축허가)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음. • 견본주택의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아파트 옥탑층에 항공장애등, 위성안테나, 피뢰침, 무선통신 중계기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세대내부 가구설치부위의 비노출면은 별도마감 처리되지 않음. • 만약 준공 전·후 최종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함. • 세대내의 각 발코니 공간별로 확장유무를 선택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시공에 따라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확장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철도,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였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확인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신용정보 요구시 사업주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한 민사.형사.행정상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치 아니함. • 계약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본 사업 진행에 따른 대관협의 시 필요에 따라 건물 주변에 방음벽 등의 시설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음벽에 의해 조망권 등의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향후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함. • 계약자는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다로그, 축약 카다로그, 간지, 홈페이지 안내문 및 기타 유인물 등 일체)에 표시된 개발계획이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향후 사업주체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함. •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상의 구획선 및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등의 표시는 분양 후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신고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계약자는 공장 생산 자재(타일), 무늬지, 천연석재, 인조대리석 등의 자재 자체의 품질 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함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에게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함. • 입주자모집공고의 기타 유의사항 내용을 숙지한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므로, 향후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함. •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름. • 본 주택 사업부지내 LPG저장소 및 우·오수 배관시설등과 관련하여 해당 시설물 설치 필요에 따른 부지가 제공될 수 있으며 제공된 부지에는 사업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유니트가 건립되지 않은 주택형의 경우 내부치수, 마감재 사양, 각종 가구 및 설비, 평면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등이 견본주택에 유니트가 건립되는 주택형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내 분양 자료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람. • 공급대상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설계 및 시공은 분양계약체결일 이후 내장 및 외장 재료의 수급 여건, 현장 시공 여건, 입주자의 편의성 제고, 관련 법규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수분양자에 대한 사전 통보 없이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서 건축법,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상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통보 등 절차를 거치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기능적·객관적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계약자는 위 변경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은 토지비, 공사비 등의 지급에 사용될 수 있음.

■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분양 보증 내용

보증서 번호	제 01282016-101-0007200호
보증금액	일금 삼백이십구억삼천칠백사십오만원정 (₩32,937,450,000)
보증기간	입주자 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주채무자(시행자)	대한토지신탁(주) (대표자 :박성표)
보증서 날짜	2016년 5월 25일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보증사고의 정의 " 보증사고"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이하 "분양계약"이라 한다)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가.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다.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라.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보증채무의 내용 ①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회사는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 서 또는 건축허가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 완료) 또는 환급이행(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책임을 부담합니다.② 복리시설의 경우 복리시설을 분양받은 보증채권자 전부의 실제 분양계약서 상의 계약금 및 중도금이 복리시설부분에 대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각 보증채권자에게 분양계약서 상의 계약금 및 중도금을 기준으로 보증 책임을 부담합니다. •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 하지 아니합니다.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3. 보증서발급(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9.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10.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대출금의 이자.11. 보증사고전에 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13. 보증채권자가 제6조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14.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15.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16.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17.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여 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② 보증회사가 제8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1. 사용승인일(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구 분	회 사	감리금액(원)	비 고
건축감리	(주)이가종합건축사사무소	566,319,600	
통신/소방감리	(주)대주기술	115,500,000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사업주체	시공사	위탁사	분양대행사
상 호	대한토지신탁(주)	양우건설(주)	영진건설(주)	(주)규림
주 소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 (삼성동, 아셈타워)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35길 10	강원도 속초시 청초호반로 43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125길 15, 2F (논현동,스페이스빌딩)
법인등록번호	110111-1492513	110111-0618194	141311-0015224	110111-3415406

■ **견본주택 사이버모델하우스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연창리 77-4번지 및 80-1번지 http://www.yangyang-naeana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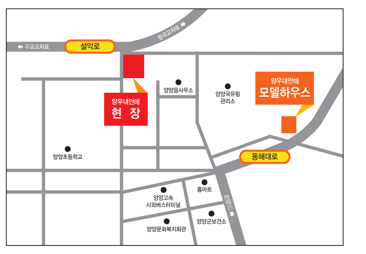

분양문의 **1800.9895**

전용면적 83㎡A-150세대 / 83㎡B-59세대 총 209세대

시행사 대한토지신탁(주) DAEHAN REAL ESTATE TRUST CO., LTD
시공사 양우건설[주]
위탁사 YOUNGJIN 영진건설주식회사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 또는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